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 및 달라지는 사항 안내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 및 달라지는 사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1년 2월경(예정)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

시 험 명	원서접수 (예정)	시험일정(예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8·9급 공채시험	3. 29. ~ 4. 2.	6. 5.(토)	7월	8월
7급 공채시험	7. 5. ~ 7. 9.	10. 16.(토)	11월	12월

※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 확정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1년도 2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달라지는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1~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부.

2.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안내 1부.

1**2021년 변경사항**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복 접수 제한**

- 2021년부터 지방직 7급 및 8·9급 등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대체 시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 인정범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에 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의 가산점수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대체 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함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 폐지 등

-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여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로 필수화

구분		현행 선택과목	개 편(안) ※ 필수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법무행정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기업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운수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직업상담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무	지방세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속기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

현행	개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u>※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u>

□ 보건·환경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직 급	직 렬	응시자격(학력제한)	
		현 행	변 경
연구사	보건연구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u>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사람</u>
	환경연구		

* 위표에서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별표 4]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의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임

** 위 표에서 “전공한 자(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건연구 및 환경연구 직렬 외 연구사 타 직렬은 변경사항 없음

1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지방공무원 임용령」 '19. 6. 18. 시행)
 - 대체가능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 등록 필요
 -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 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대상시험 : 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플렉스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불요)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유의사항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 성적만 등록가능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참고 2 참조)

- 참고 1.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참고 1]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참고 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준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7급 공채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①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제출 : 응시자 → 각 시·도)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② (대상 확인 : 각 시·도 → 응시자)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공고) 예정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시험일자 등 입력
 - *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